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안

# 검토보고서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 창 호

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발 의 자 : 연철흠 의원 등 7명

##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○ 발의일자 : 2017년 8월 21일
- ○ 회부일자 : 2017년 8월 24일

## 3. 제정이유

- ○ 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4. 주요내용

- ○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,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(안 제3조)
- ○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화 능력을 향상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4조)

○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함(안 제6조)

○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지원(안 제7조)

## 5. 검토의견

금번 제정조례안은 사회적, 경제적, 지역적, 신체적 여건으로 정보에의 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, 정보격차 해소에 관하여는 「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」 제16조에서 최소한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, 별도 조례 제정을 통해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, 모바일 정보기술(태블릿PC 등) 교육이나 기기 지원 내용을 법률에 앞서 선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민 복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됨.

이 조례안은 목적, 정의, 도지사의 책무, 시행계획 수립, 실태조사, 교육기관 지원, 정보격차 해소 지원, 위탁, 홍보 등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정보취약계층의 현황과 정보격차 해소 정책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(안 제5조), 정보화 교육기관 운영 및 교육비용 지원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직업능력 향상 및 소외계층 교육이 가능

하도록 하였으며(안 제6조),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위한 지원을 가능케 함으로써(안 제7조) 계층 간 정보화 수준 차이가 심화되고 있는 모바일 융합 정보기술 분야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본 제정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및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의 원할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,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고, 조문상 별다른 문제가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안 1부. 끝.